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0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0. 김정재의원 등 108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12)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

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